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harter

차례

언 해 / 약 어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창립취지문	2

제1장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

제1조 대회 명칭	3
제2조 위원회 명칭	3
제3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의 목적	3
제4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 조직의 구성	4
제5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상징	4
제6조 세계무예마스터십 기	5
제7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주제 및 슬로건	5
제8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에 대한 권리	5

제2장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제9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위	6
제10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목적 및 역할	6
제11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	7
제12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조직	9
제13조 총회	9
제14조 집행위원회	11
제15조 위원장	13
제16조 분과위원회	14
제17조 언어	14
제18조 재원	15

제3장 가맹단체

제19조 가맹단체 승인	15
--------------------	----

제20조 가맹단체의 의무 및 역할	16
--------------------------	----

제4장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제21조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구성 및 역할	16
--------------------------------	----

제5장 세계무예마스터십

제22조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17
제23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유치 신청	18
제24조 조직위원회	18
제25조 참가 자격	18
제26조 참가 신청	19
제27조 세계반도핑규약	19
제28조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	19
제29조 의견	20

제6장 제재 조치

제30조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	21
제31조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21
제32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22

연혁

- 2016. 09. 02. 제정
- 2017. 11. 03. 일부개정
- 2019. 08. 30. 일부개정
- 2020. 02. 28. 일부개정
- 2020. 10. 29. 일부개정

약어

WMC	사단법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Masterships	세계무예마스터십
IF	국제연맹
MO	가맹단체
NMC	무예마스터십위원회
OC	조직위원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GAISF	국제스포츠경기연맹총연합회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AN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
TAFISA	국제생활체육협회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ICM	국제무예센터
GM	총회
EB	집행위원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창립취지문

무예는 인류의 끊임없는 생존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자기 방어라는 본래적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자아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자신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지닌 무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양식의 무예가 세계화라는 옷을 입고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의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각 무예의 국제 경기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포츠를 위한 근대올림픽은 지구촌의 대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인류의 전통 문화 유산인 무예를 위한 종합경기대회는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을 뿐, 그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WMC)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무예를 수련하고 있는 무예인과 무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지속적인 개최를 보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류의 유산으로서 무예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승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세계 무예의 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의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창립되기까지 그동안 세계적으로는 스포츠어코드의 월드컴벳게임 개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생활체육협회(TAFISA), 각 국제무예연맹별 국제무예대회 개최 등 세계무예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세계무술연맹 창립, 국제무예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의 종합결정체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창립은 전 세계 인류에게 무예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전 세계 무예인들이 무예인으로서 책무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6년 9월 2일

세계무예마스터십 창립대표·총청북도지사 이 시 종

- 1 -

- 2 -

제1장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

제1조 대회 명칭

1. 대회의 국문 명칭은 '세계무예마스터십', 영문 명칭은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영문 약어는 'Masterships'이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란 세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세계'는 국제적 경기대회를 의미하고, '무예'는 대회의 핵심 성격을 나타내며, '마스터십'은 스포츠 중심의 대회 명칭과 차별화된 무예를 위한 경기대회를 상징한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은 무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의미한다.
4. 세계무예마스터십은 후속세대가 무예에 입문하고 무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키즈무예마스터십과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29.>
5.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재난 및 천재지변의 상황을 대비하고, 온라인이 가능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세계온라인(가상)무예마스터십을 포함한다. [본항신설 2020.10.29.]

제2조 위원회 명칭

1.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주관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국문 명칭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영문 명칭은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영문 약어는 'WMC'이다.

제3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의 목적

1.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은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을 준수하여, 전 세계에 무예의 가치를 실현한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은 무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활동을 장려한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은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는데 있어 무예의 역할을 강조한다.

4.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은 인류의 무형유산으로서 무예를 후속세대에게 전수하는데 사명을 다한다.
5.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은 UNESCO, IOC, GAISF, ANOC, ICM 등 국제적 유관기관과 함께 인류의 신체활동 문화를 보급하는데 일조한다. <개정 2020.2.28.>

제4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 조직의 구성

1.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 조직의 기본적 구성은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최고 권위를 지닌 기관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가맹단체,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NMCs)를 포괄한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 조직의 구성은 위에서 제시된 기본 조직을 토대로 UNESCO, IOC, GAISF, ANOC, ICM 등 국제적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개정 2020.2.28.>
3.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 조직의 구성은 위의 기관에 소속된 무예인, 감독, 심판, 임원 등 모든 개인과 WMC와 협약하거나 WMC가 승인한 모든 조직과 기관을 포함한다.

제5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상징

1.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상징은 제1회 대회인 2016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상징을 사용한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상징은 지구의 기울기만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지구의 6대주를 조화롭게 형상화하여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검정 등 6가지 색깔로 표현한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 상징은 다양한 무예와 무예인들이 모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표현한다.
4. 세계무예마스터십 상징은 특징적 요소와 함께 6대주를 형상화한 다양한 도안을 포함한다.

- 3 -

- 4 -



제6조 세계무예마스터십 기

1. 세계무예마스터십 기는 흰색 바탕에 6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세계무예마스터십 상징을 중앙에 배치한다.



제7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주제 및 슬로건

1.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주제는 '세계 무예의 조화'이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 슬로건은 '무예로, 하나로! 무예로, 세계로!'이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 주제 및 슬로건은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을 세계로 확산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다.

제8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에 대한 권리

1.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은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 상징, 기, 주제 및 슬로건, 방송, 광고, 마케팅 등을 활용한 영리 추구하고 그 사용권을 포함한다.

7.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무예와 무예인의 정치적·종교적·상업적 남용을 반대한다.
8.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금지약물복용, 승부조작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세계무예마스터십의 레거시를 보호하고 활용한다.
10.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무예를 후속세대인 청소년에게 보급하고, 여성의 무예 참여를 장려한다.
1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국내외 무예조직,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

제11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지위 및 의무
 - 1.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자연인이다.
 - 1.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종교적·상업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1.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을 준수한다.
 - 1.4.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국가와 조직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을 수행하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이해를 대변한다.
 - 1.5.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을 방해하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에 위배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1.6.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총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 1.7.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의 구성
 - 2.1. 국제연맹(IFs)의 대표 20명 이하
 - 2.2.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NMCs)의 대표 20명 이하
 - 2.3. 국제연맹(IFs)의 무예를 대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무예인 20명 이하
 - 2.4. 세계 무예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30명 이하
 - 2.5. 개최 도시 혹은 지역의 대표 1인

2.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에 대한 권리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귀속되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에 대한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사용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4.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에 대한 권리의 사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과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구성원에게 일부분 환원되어야 한다.

제2장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제9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위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에 둔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주최하는 최고 기관이다.

제10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목적 및 역할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지속적인 개최를 보장한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무예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무예 진흥과 무예 교육을 장려한다.
4.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무예, 무예 조직 및 무예 관련 경기 대회의 조직과 발전 등 무예진흥과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지원한다.
5.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소속된 가맹단체와 국가무예위원회(NMC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6.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평화, 존엄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한다.

- 2.6. 무예 및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 인사 및 교육·연구기관 대표 20인 이하
- 2.7.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11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2.8. 제11조 2.1., 2.2., 2.3.을 대표하는 회원이 전체 회원의 과반수를 유지해야 하며, 제11조 2.1., 2.3.에 해당하는 국제연맹(IFs)은 총회 직후 개최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기준으로 한다.
3. 위원의 선출 및 임기
 - 3.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개인은 위원회에 가맹(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단,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창립 시에는 기 추천된 자에 한해 위원장이 선임한다.
 - 3.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위원과 명예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위원과 명예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 3.3. 제11조 2.1., 2.2., 2.5., 2.6.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 단체장의 임기와 연동한다.
 - 3.4. 제11조 2.3., 2.4.의 위원은 4년간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연임할 수 있다.
 - 3.5. 개최 도시 혹은 지역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기는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지가 확정된 총회부터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연도 총회까지이다.
4. 위원의 탈퇴 및 제명
 - 4.1. 위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 4.2. 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후원금의 반환 등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4.3. 위원 또는 명예위원, 명예위원장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현장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 또는 명예위원, 명예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 4.4. <삭제 2020.10.29.>
 - 4.5. 선출된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연속 2

회 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주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2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조직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권한을 행사한다.
 - 1.1. 총회
 - 1.2. 집행위원회
 - 1.3. 위원장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제11조 2.1., 2.2., 2.3., 2.4., 2.5., 2.6.의 위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2.1.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 변경 및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해산에 관한 사항
 - 2.2. 위원의 가입 및 **위원, 명예위원장, 명예위원 제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9.>
 - 2.3. 집행위원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4. 가맹단체(정가맹단체) 및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승인 및 철회에 관한 사항
 - 2.5.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 선정
 - 2.6.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도시의 선정
 - 2.7.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승인
 - 2.8.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9. 기타 중요사항
3.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3.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국제회의의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연도에는 개최국에서 대회기간 중 개최한다.**

- 9 -

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5.5. <삭제 2019.8.30.>
6. 의결 제척
 - 6.1. 의장 또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6.1.1. 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임원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 6.1.2. 개최지 선정 및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위원회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7. 서면의결 및 의사록
 - 7.1. 위원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2. 사무총장은 총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헌신설 2019.8.30.]

제14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WMC 위원장, 부위원장, WMC 사무국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최고 운영 및 집행기관이다.
2. 집행위원회의 역할
 - 2.1.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2.2. 조직에 관련된 내부 규정을 승인한다.
 - 2.3. 총회의 의사 절차를 수립한다.
 - 2.4.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제출한다.
 - 2.5. 위원의 가입 및 제명을 위해 명단을 총회에 제출한다.
 - 2.6. 집행위원회 위원의 가입 및 제명을 위해 명단을 총회에 제출한다.
 - 2.7. 가맹단체(정가맹단체) 및 국가무예위원회의 승인 및 철회에 대한 사항을 총회에 제출한다.
 - 2.8. 가맹단체(준가맹 및 **참여단체**)의 승인 및 철회에 대해 의결하고, 총

- 11 -

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국내외 불가피한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소집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 결정에 따라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 3.2. 정기총회는 개최 최소 60일 전에 일시 및 장소와 최소 30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3.3. 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할 후 최소 40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3.4.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으나,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3.5.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개최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6. 임시총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3.6.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6.2. 집행위원회 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6.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의장
 - 4.1.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4.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 4.3. 위원장의 진퇴에 관한 의제를 심의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5. 의결 정족수
 - 5.1. 총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 5.2. 제11조 2.1., 2.2., 2.5., 2.6.의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5.3. 제11조 2.1., 2.2., 2.5., 2.6.의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총회 개최 5일전까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그 사실을 **위원장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 5.4. 제11조 2.1., 2.2., 2.5., 2.6.의 대리인의 경우 해당 총회에서만 위

- 10 -

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10.29.>

- 2.9.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을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2.10.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후보도시를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2.11.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업결과 및 결산에 대해 총회에 제출한다.
- 2.1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 2.13. 총회의 결의 또는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 2.14. 기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한다.
3. 집행위원회 소집 및 의결
 - 3.1.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3.2.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최소 15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3.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집행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3.4. 집행위원회의 성원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5.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하여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6. 집행위원회는 화상회의, 음성회의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임기 및 직무
 - 4.1.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집행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창립 시에는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 4.2. 집행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3.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4.4. 보선된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5.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

- 12 -

- 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 4.7. 집행위원회 위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5. 집행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
 - 5.1. 위원을 선출한 국제연맹(IFs) 및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NMCs)가 탈퇴 및 해체된 경우
 - 5.2. 본인이 사임한 경우
 - 5.3.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 5.4. 제11조 2.1., 2.2., 2.3., 2.5., 2.6. 위원 중 집행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후 당해 단체에서 해임 또는 교체 추천된 경우

제1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최소 50일 전에 입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 1.1. 차기 위원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라 함)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거관리 위원장 1인 및 선거관리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선거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본항신설 2020.10.29.]
- 1.2.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이 있는 위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약력 1부, 후보자의 소견 1부를 선거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10.29.]
- 1.3.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며, 재직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참석 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위원장 당선자로 한다. 단, 제1차 투표결과 참석 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 득표자를 위원장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라 하더라도 제1.2.항의 방법에 의하여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0.10.29.]

3.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과 기타 문서 상 한국어와 영어 원문 사이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한다. 단, 특별히 서면 상 제시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3.>

제18조 재원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기부금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8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의 확산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NMC 및 IF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본항신설 2020.10.29.]

제3장 가맹단체

제19조 가맹단체 승인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하나의 무예와 일정 수준의 국가를 관할하는 무예단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참여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20.10.29.>
- 2.1. 정가맹단체는 세계무예마스터십에 정식종목으로 참여하는 경기종목으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집행위원회를 거쳐 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된 국제연맹(IFs)을 말한다.
- 2.2. 준가맹단체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준회원으로 승인받아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제한받는 무예단체를 말한다.
- 2.3. **참여단체**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무예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0.29.>

2. 위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초대위원장의 첫 번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집행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5. 위원장은 WMC 사무국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일반 업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0.29.>
6.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이 다음 총회까지 직무를 대리하며, 다음 총회 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는 총회, 집행위원회 혹은 위원장의 자문을 위해 필요 시 조직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임무를 다한 경우 해산을 결정한다.
3.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실시하며, 위원장은 회의 참석 시 최고 권위를 지닌다.
4.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반드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 자격을 지녀야 한다.
5.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에 소속되기 위한 개인은 반드시 집행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6. 분과위원회의 제 규정은 집행위원회가 승인한다.
7.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련된 제반조건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0.10.29.]

제17조 언어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이다.
2. 총회 등 각종 회의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가맹단체는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가맹단체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가맹단체의 의무 및 역할

1. 가맹단체는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을 준수하여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을 확산하고 장려한다.
2. 가맹단체는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무예로부터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3. 가맹단체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4. 가맹단체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가맹단체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및 각종 무예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무예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 가맹단체는 소속된 무예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장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제21조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조직되었을 경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2.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에 따라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을 보급하며, 해당 국가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할 경우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3.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각 국가의 무예단체를 가맹단체로 승인할

- 수 있다.
- 4.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각국의 유네스코 위원회, 체육 및 스포츠 조직 등과 협조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무예를 보급하고 발전시킨다.
- 5.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각국의 무예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6.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구성 후 1년마다 활동보고서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10.29.]
- 7.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10.29.]
- 8. 그 외 구성, 승인, 권한 등은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0.10.29.]

제5장 세계무예마스터십

제22조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 1. 세계무예마스터십,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세계키즈무예마스터십 개최 주기는 4년으로 하고, 개최지 선정은 최소 개최 2년 전에 하며, 세계온라인(가상)무예마스터십은 매년 개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최주기 및 개최지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19.8.30., 2020.10.29.>
- 1.1. 개최지 또는 국제사회에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세계키즈무예마스터십의 대회개최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가상)대회로 개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10.29.]
- 2. 세계무예마스터십의 개최 시기, 개최식 및 폐회식, 시상식, 경기장, 선수촌 등 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는 도시 혹은 지역 단위로 개최할 수 있다.
- 4.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하는 도시 혹은 지역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7 -

- 5.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집행위원회에서 개최 후보도시 혹은 지역을 선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 6. 세계무예마스터십이 불가피하게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개최 도시 혹은 지역의 지정을 철회한다.
- 7.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개최 도시 혹은 지역의 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23조 세계무예마스터십 유치 신청

- 1.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 및 지역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 및 도시는 별도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회 개최 2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장이 작성한 보증서와 함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회신청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 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신청할 내용은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IF의 경기장시설설계에 대한 의견서,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 선수단의 숙소 및 수송계획, 기타 유치 신청 관련된 제반 조건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대회운영규칙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0.10.29.]

제24조 조직위원회

- 1.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해당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협조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 2.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될 경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무국의 관리감독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 3.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 운영에 있어 주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와 협의 결정한다.

제25조 참가 자격

는다. <개정 2020.10.29.>

- 1. 세계무예마스터십 참가 자격은 가맹단체의 참가 자격을 존중하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 자격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2. 2개 이상의 국적을 지닌 무예인은 세계무예마스터십 최종 엔트리 제출 시 자신이 선택한 국가를 대표한다.
- 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령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가맹단체가 규정한 연령 제한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참가 신청

-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가맹단체만이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최소 개최식 1년 전에 가맹단체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승인한 가맹단체는 참가무예인 명단을 조직위원회가 명시한 기한 내에 조직위원회에 송부하며, 조직위원회는 그 명단을 수리한다.
- 3. 가맹단체는 국제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무예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의 목적과 상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단체와 조직위원회는 참가하려는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 4. 참가 신청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세계반도핑규약

-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세계무예마스터십에 참가한 모든 가맹단체,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NMCs), 무예인은 세계반도핑기구의 세계반도핑규약을 준수한다.
- 2. 세계반도핑기구의 위임을 받은 국가반도핑기구는 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세계반도핑규약을 실행하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세계반도핑기구에 가입되기 전까지는 세계반도핑기구에 이미 가입된 가맹단체만 세계반도핑규약의 제재를 받으며,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모든 종목이 세계반도핑규약의 제재를 받

- 19 -

제28조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

- 1.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은 각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결정한 무예를 말한다. 단, 제1회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기 추천한 무예 종목을 포함한다.
- 2.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은 25개 이내의 무예로 한정하며, 각 세계무예마스터십에 포함될 무예 종목은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3.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은 가맹단체의 수준과 자격을 고려하여 정식 종목과 시범 종목, 특별종목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GAISF 회원의 무예종목과 갈등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GAISF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2.28.>
- 4.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 선정과 운영 그리고 세부종목의 결정에 대해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하여,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가맹단체 및 조직위원회가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0.10.29.>
- 5.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종목은 각각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며, 타 무예 종목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이종 간 무예 경기를 금지한다.

제29조 의전

-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의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며, 집행위원회는 의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개최식과 폐회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의 의전 대상이다. 단, 위원의 의전은 대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9.>
- 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의 의전 우선순위는 위원장, 명예위원장, 명예위원, 부위원장, 집행위원, 그 외의 위원, 조직위원,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단체 대표,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무예위원회 위원장 순이다. <개정 2019.8.30.>

- 20 -

제6장 제재 조치

제30조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재 조치
 - 1.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이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제11조 4.3., 4.4., 4.5.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무예인, 임원 및 심판에 대한 제재 조치
 - 2.1. 무예인, 임원 및 심판이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 및 세계반도핑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 2.2. 집행위원회는 결정된 제재 조치를 가맹단체 및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통보하며, 가맹단체 및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2.3. 집행위원회는 제재 조치 이행상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1. 가맹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
 - 1.1. 가맹단체가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 및 세계반도핑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 1.2. 가맹단체의 제명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한 제재 조치
 - 2.1.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 및 세계반도핑규

- 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 2.2.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제명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조직위원회에 대한 제재 조치
 - 3.1. 조직위원회가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 및 세계반도핑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 3.2.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권 박탈, 개최 도시 및 지역의 권리 박탈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3.3. 개최 후보 도시 및 지역의 권리 박탈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스포츠중재재판소 (CA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를 인정하며, 제30조 및 제31조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 및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 규약을 준수한다.
2. 제30조 및 제31조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제재에 대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한다. [본조신설 2020.2.28.]